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1
----------	-----

제출연월일 : 1999. 7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97년 7월 23일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97년 10월부터 시민시장을 운영해오면서 도출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시민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

- 가. 사용인의 자격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사용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 나. 시설물 사용허가는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2개 이상의 시설물을 허가할 수 있으며, 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재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 한하여 재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겨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이상 영업을 하지않은 경우,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도록 함.(안 제6조)
- 라. 사용료는 허가기간개시일 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연8%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사용인은 사용인간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을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 바. 사용인은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 계약증서를 제출토록 하며, 시설물 전체를 보험목적물로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보험계약업무와 보험료액의 분담액 징수에 관하여 각 사용인을 대리 토록 함. (안 제14조)
- 사. 시장은 시민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시장부지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입법예고기간 : '99. 4. 13 ~5. 3(21일간)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시민시장(이하 “시민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시민시장의 건축물을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획·구분된 점포 (길이 4m×너비 2.8m×높이3.9m)를 말한다.
2. “사용인”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사용인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규모, 사용료, 사용인의 자격등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사용인을 정한다.

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2개이상의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월 20일이상 영업을 하지않은 경우
4.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사용인이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사용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용인은 사용료를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에 의하여 허가기간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하여 연 8%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물사용료는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시설물의 반환일까지 계산한다.

제8조(사용료의 연체요율) 사용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설물 변경) ①사용인이 시설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사용인이 미리 승인없이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원상복구 및 반환) ①사용인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간신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장소 변경허가) ① 사용인은 사용인간 합의에 의하여 시설물을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경우에 시민시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교환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인의 준수의무) 사용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시장 운영과 영업행위에 관련한 제반법령, 조례, 규칙 및 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민시장의 안전과 쾌적한 위생질서가 유지되도록 시설물 내·외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4. 시민시장내에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품, 인체에 위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자기 책임하에 비품과 상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게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계약) ① 사용인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정한 기한내에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보험계약 업무와 보험료액의 분담액 징수에 관하여 각 사용인을 대리할 수 있다.

제15조(상인조합 구성운영) ① 사용인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합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시장 상인조합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3.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사업계획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시장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에 필요한 위탁비용은 시장과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
2. 상거래 질서의 확립
3. 사용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5. 주변환경개선
6. 사용인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7.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수탁자 지도감독) ①시장은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민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해지) ①시장은 수탁자가 그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 해지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5일장운영) ① 시장은 시민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시장 부지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5일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의 정수는 별표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용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은 사용인이 기 납부한 보증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액을 정산한 후 반환한다.

[별표]

관리비 기준표(제20조제2항관련)

구 분	1개구획당면적기준	1개구획당관리비	비 고
5일장	길이3.3m×너비1.8m	2,000원/일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71
------------	-----

제안년월일 : 1999. 9. 13.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외 6인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 내용중 불합리한 조문은 수정하고 부적합한 내용은 삭제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사용허가) 제4항중 "2개이상의"를 "4개이내의"로 수정함.
- 안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중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를 "사용인은"으로 함.
- 안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항 조문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조문중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을 "시설물 사용권을"로 함.
- 안 제15조(상인조합 구성 운영) 조문을 삭제함.
- 안 제20조(5일장 운영) 제2항 조문 "5일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는 별표에 의한다"를 삭제하며, 이에 따른 별표 [관리비 기준표(제20조 제2항 관련)]를 삭제함.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항중 “2개 이상의”를 “4개 이내의”로 한다.

제5조(양도 및 전도금지) 중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를 “사용인은”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항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제15조(상인조합 구성 운영)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0조를 제19조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5일장 운영)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민시장 부지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3항중 “시장은 사용인이”를 “시장은 종전의 조례에 의해 사용인이”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4조(사용허가)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사용인의 인접한 시설물에 한하여 <u>2개이상의</u>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③ (원안과 같음) ④ <u>4개이내의</u>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인은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4. (생략) ② (생략)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u>취소하여야 한다.</u> 1.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4.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제15조(상인조합 구성 운영) ① 사용인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조합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시장 상인조합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3.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사업계획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 제)

원 안	수 정 안
<u>제16조 (생략)</u>	<u>제15조 (원안 제16조와 같음)</u>
<u>제17조 (생략)</u>	<u>제16조 (원안 제17조와 같음)</u>
<u>제18조 (생략)</u>	<u>제17조 (원안 제18조와 같음)</u>
<u>제19조 (생략)</u>	<u>제18조 (원안 제19조와 같음)</u>
<u>제20조 (5일장 운영) 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시장 부지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5일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는 별표에 의한다.</u>	<u>제19조 (5일장 운영)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시장 부지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u>
<u>제21조 (생략)</u>	<u>제20조 (원안 제21조와 같음)</u>
부 칙	부 칙
①~②(생략)	①~②(원안과 같음)
③(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후 <u>시장은 사용인의</u> 기 납부한 보증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체납액을 정산한 후 반환한다.	<u>③(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u> <u>시장은 종전의 조례에 의해 사용인의</u>

원 안	수 정 안								
<p><u>[별표]</u></p> <p>관리비기준표(제20조 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1구획당 면적기준</th><th>1개구획당 관 리 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5일장</td><td>길이 3.3m × 너비 1.8m</td><td>2,000원/일</td><td></td></tr> </tbody> </table>	구 분	1구획당 면적기준	1개구획당 관 리 비	비고	5일장	길이 3.3m × 너비 1.8m	2,000원/일		<p><u>(산 제)</u></p>
구 분	1구획당 면적기준	1개구획당 관 리 비	비고						
5일장	길이 3.3m × 너비 1.8m	2,000원/일							